

작성 방법

1.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를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.(예시: 2027)
2.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「소득세법」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3. ⑤금융기관명, ⑥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·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명,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4.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[예: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(주)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].
5. ⑧이용자 :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6. ⑨내·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“1”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“2”를 적습니다(참고: 내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, 재외국민·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으로 적습니다).
7. ⑩거래내용 : 이용자별,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‘양도 등’, ‘취득 등’, ‘이전’, ‘인입’, ‘대여’ 거래내용의 합계를 적습니다.
8. ⑪가상자산 종류 : 국제청holm스-“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”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(예시: ‘비트코인’의 경우 ‘000145’, ‘BTC’,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‘999999’, 해당 심볼 작성).
9. ⑫양도 등 거래 : 이용자별,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거래로 양도한 가상자산의 수량, 가액,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
(매도·교환양도, 이전 거래 시 가상자산으로 수수료 지급 등 가상자산 보유수량이 감소하는 거래를 포함하되 대여 거래로 가상자산을 받은 거래는 ⑫양도 등 거래에 작성하지 않고 ⑫대여 거래에 작성)

※ 수량은 최소 거래단위까지 작성[예) 비트코인 1BTC → 1.00000000], 가액 및 수수료는 원 단위(소수점 이하 절사)로 작성. 이하 동일

10. ⑬취득 등 거래 : 이용자별,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취득 등[매수·교환취득·기타취득(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등)]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, 가액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
11. ⑭이전 거래 : 다른 가상자산주소(다른 거래소, 개인지갑, 해외 거래소 등)로 이전(거래소 내 계정 간 이전 포함)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상속, 상속 외, 합계로 구분하고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
12. ⑮인입 거래 : 다른 가상자산주소(다른 거래소, 개인지갑, 해외 거래소 등)로부터 인입(거래소 내 계정 간 인입 포함)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상속, 상속 외, 합계로 구분하고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
13. ⑯대여 거래 : 가상자산 대여 거래로 받은 가상자산의 수량, 가액(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, 대여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포함)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.
14. ⑰연간 변동내역 : 대상연도 1년간 이용자별, 가상자산 종류별 증감과 기초·기말재고의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[연간 변동내역 : ⑱기초재고 + ⑲증가 - ⑳감소 = ㉑기말재고].
15. ⑱기초재고 : 대상연도의 1월 1일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, 이용자의 단위당 취득가액 수정여부(Y/N)를 적습니다. 다만,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최초로 시행되는 과세연도(2027년) 1월 1일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단위당 취득가액은 「소득세법」 제37조제5항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합니다.
16. ⑲증가 : 수량은 ⑬ 취득 등 거래 수량과 ⑮ 인입 거래 수량의 합계 수량을 기재하고, 단위당 취득가액은 ⑬ 취득 등 거래의 가액을 수량(=⑬ 취득 등 거래 수량+⑮ 인입 거래 수량)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기재합니다.

(작성예) ⑬ 취득 등 거래의 수량과 가액이 각각 10개, 150원이고, ⑮ 인입 거래 수량이 5개인 경우: ⑲ 증가의 수량 = 15개(=10개+ 인입 5개), 단위당 취득가액=10원(=150원/15개)

17. ⑳감소 : ⑫ 양도 등 거래의 수량과 ⑭이전 수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18. ㉑기말재고 : 대상연도의 12월 31일 24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.

(작성예) ⑱ 기초재고 : 수량 10개, 단위당 가액 5원, ⑲ 증가 : 수량 15개, 단위당 취득가액 10원, ⑳ 감소 : 수량 5개인 경우,

㉑ 기말재고 : (수량) 기초 10개 + 증가 15개 - 감소 5개 = 20.00000000, (단위당 취득가액) [기초 50원(=10개×5원) + 증가 150원(=15개×10원)] ÷ 25개(기초 10개 + 증가 15개) = 8원/1개